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전 협의·권고 절차 마련(안 §11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정지,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이전 대상자의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환당국이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(협의 및 권고)를 시행령에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환거래의 정지,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·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2.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(안 §1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'20.3월 증권사 파생거래(ELS 등) 증거금 납입 등 비은행권 단기 외화수요 급증이 시장불안 촉발
- 현행 외환법규상 증권금융회사는 외환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하여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에 애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 다양화 및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3. 과태료 부과금액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(안 §33조, 안 §40조, 안 §41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과태료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위반금액 기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
-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'06년도부터 건당 2만불 이내로 지속 유지
- 외환거래 확대 등에도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등 철차적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은 '09년도 수준(10억원 초과)과 동일
- 사후보고 위반(700만원)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사전신고 위반 금액(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)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(안 §33조)
- 철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(자본거래 신고위반: 10억원 → 20억원,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: 25억원 → 50억원) 대폭 상향(안 §40조)
-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(안 §41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환거래수요 및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, 제재 대상기준 및 제재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·기업의 부담 경감 및 수용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4.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(안 §3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오래된 규율, 모호한 요건, 불편한 법령해석 절차 등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외환제도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저해
- 경제·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의 회의체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업계·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,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‘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’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업계·학계 등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외국환거래법령 해석 및 실제 법적용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